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제 정	2004. 12. 01	개 정	2019. 11. 18
개 정	2005. 06. 14	개 정	2020. 10. 07
개 정	2006. 01. 17	개 정	2022. 05. 11
개 정	2006. 05. 02		
개 정	2006. 10. 31		
개 정	2006. 12. 13		
개 정	2007. 06. 04		
개 정	2007. 12. 27		
개 정	2010. 01. 06		
개 정	2015. 03. 20		
개 정	2017. 08. 04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체성 확립,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문화 창달 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 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Seongnam Cultural Foundation”(약칭 SCF)이라고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17., 2015.3.20.>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과 조사연구
2.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
4. 성남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 <개정 2005.6.14.>
5. 성남아트리움의 운영 및 관리 <개정 2022.5.11.>
6. 기타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재 산 및 회 계

제6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시에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과 재단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및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한다.

④ 재단의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4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동 재산에 대하여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편성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④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

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7조 2(기부금품의 모집 및 공개) <신설 2020.10.7.>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한 사업 및 재단의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1항에 의거하여 시행한 연간 기부금품 모집 및 활용실적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단 및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 모집·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에 의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기업의 협찬금, 재단의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고) ① 재단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3., 2015.3.20.>

② 재단은 세입·세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검사 등) ① 재단은 매년 초 기본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시장 및 의회가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한 때에는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재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개정 2010.1.6.>
3. 이사 15인 이내
4. 감사 2인

② 제1항제3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6.>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0.1.6.>

제17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②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6.12.13., 2015.3.20.>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그 호칭을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라 한다. <개정 2005.6.14., 2010.1.6., 2017.8.4., 2019.11.18.>

④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가 된다.

1. 삭제<2006.12.13.>

2. 시 문화재단 담당국장 <개정 2006.12.13., 2010.1.6., 2015.3.20.>

3. 시 인사·조직 담당국장 <개정 2007.6.4., 2010.1.6., 2015.3.20.>

⑤ 감사 2인은 선임직 감사 1인과 당연직 감사 1인으로 구분하되, 선임직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고 당연직 감사는 시 문화재단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2017.8.4.>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6.>

②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임직 이사를 추가로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만료일은 기 위촉한 선임직 이사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단, 이사장이 임명한 대표이사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2017.8.4., 2019.11.18.>

제19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기타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에 의하여 해임된 자를 다시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2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6.>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6.>

③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0.1.6.>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17조제4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6.>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2. 재단의 운영과 제반 업무에 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 요구 및 시장에게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제21조(임원의 보수)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하고,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이사회

제22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0.1.6.>

제23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조례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전자화상, 화상회의 등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의결제척 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6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제20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이사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1인과 감사 1인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 5 장 조직 및 구성인원

제28조(조직 및 정원)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 정원은 177인(일반직 119, 공무원직 58) 이내로 한다. <개정 2005.6.14., 2006.5.2., 2006.10.31., 2007.12.27., 2022.5.11.>

제29조(직원의 임면 등) ①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공무원 파견요구 등) 재단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자문기구) 대표이사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두고 15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6.>

제32조(수당의 지급 등) 제31조에 의하여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보칙

제33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해산)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의 사유로 재단을 해산할 경우(파산 및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이사회 의결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제36조(공고)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경기도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시보에 게재한다. 다만,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재단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연도) 재단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단 설립을 위하여 설립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업계획 등) 재단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설립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당초의 임원) 재단 설립 당초의 임원은 “별지 2”와 같다.

제6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 3”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6.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6.1.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6.5.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6.10.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6.12.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7.6.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7.12.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3.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8.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11.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10.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5.11.>

